

기안용지 외생계

분류기호	도행 1438-388 (전과번호 72-9441)	권장규정 3 조1항 구장 권결사항
처리기관	보건사회부장	
시행일자	2002.6	
보존년함		

보조기관	보건행정과장	형	기획관리관
	위생과장		예산담당관 <span style="float: right;">(한)</span> 회계과장 <span style="float: right;">(한)</span> 예산1계장 <span style="float: right;">(한)</span> 시민국장 <span style="float: right;">(한)</span>
기안책임자	김보학	75. 2. .	조

경수합	공고제 55호 관안참조	밤	시	장	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격열 1975. 3. 9 작성             </div>
-----	-----------------	---	---	---	---	---

세 목 1975년도 이용사및 미용사 자격 시험 실시  
제 1 안

"내부 검제"

1. 관위 1435-2287(75. 2. 17)호와 관련임
2. 75년도 이용사및 미용사 자격 시험을 이용사및 미용사법

제 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및 보건사회부 내규 제 64호(이용사및 미용사 자격 시험규정)에 의거 이용사및 미용사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합니다

가. 실시 요령

별첨 시험 실시 계획서와 소요 예산 집행 계획서에 의거

실시 조치함

- 첨부 1) 시험 실시 계획서 1부  
2) 소요 예산 집행 계획서 1부  
3) 공고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보건사회부 장관
참조	환경위생과장
제목	동 권
	1. 환위 1435-2207(75. 2. 17) 호와 관련임
	2. 방시 75년도 이용사및 미용사 자격시험을 넘침 공고문과 같이
심시	코저 합니다
첨부	공고문 1부. 끝.
	제 3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동 권
	1. 방시 75년도 이용사및 미용사 자격시험을 넘침 공고문과 같이
심시	하오니 귀 관하에 주지시켜 다수 응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1부.
	수신처 나 2-11
	제 4 안
수신	시사 5-15, 천호지소
제목	동 권
	1. 방시 75년도 이용사및 미용사 자격시험을 넘침과 같이 심시타니
	귀 관내 전업소와 해당자에 널리 주지시켜 다수 응시토록 하고
	2. 전 이, 미용 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무자격자는
	이런 자격시험에 응시토록 게용하고
	3. 이자격 시험 응시자들의 종업원 확인증 신청이 있을 때는 "이, 미
	용사 종업원 대장" (보행 1438-2622호 74.12.10.참조)에 의거 도, 구
	확인증 발급에 정확을 기함것
	4. 기타 등 자격 시험구 비식류의 장수 및 록인공과 건강진단서등을
	신속 발급도, 주 조치하여 심합 응시에 지장이 없도록 함것. . . .

첨부 공고문 1부 및 응시원서 부. 끝.

제 5 안

수신 수신처장

제목 등 권

1. 당시 75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실시 하오니 귀회 산가 회원들에게 널리 주시게 다수 응시보통 조치하시 주시고

2. 귀회 회원중 이, 미용사 자격시험 규정제8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학과 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을 아택 양식에 의거 이력서(사진첨부)

2명을 첨부 수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과 및 실기시험 위원 각 1명)

종 별 | 성 명 | 관 령 | 직 위 | 연 령 | 업 소 명 | 주 소 | 전 호 (자택)

(실 기) (한문)

첨부 공고문 1부

수신처 한국 이용 사회 중앙회장

대안 이용 사회 중앙회장

제 6 안

수신 문체공보실장

제목 이, 미용사 자격 시험 실시에 따른 신문 공고 게재 보도 의뢰

1. 당시 75년도 이, 미용사 자격 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실시 하오니 신문, 방송을 통한 보도와 신문 공고 게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10부. 끝

제 7 안

수신 정화고용 기술학교장

제목 학과 시험 사용 협조

1. 당시 75년도 이,미용사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코저 하오니 귀고의 심습 및 심습기구를 사용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 일시: 75.4.27(일) - 미용

75.5. 4(일) - 미용

2. 학교 시험 사용에 따른 임대료는 당시 소정 금액을 학교장 청구에 의하여 지불 하겠습니다. 끝.

제 8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등 건

1. 당시 75년도 이,미용사 자격 시험을 별첨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고 고장 및 고 사용 와과 시험 및 심기시험 위원을 아래 양식에 의하여 이력서(사진첨부)2통첨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별첨)	주삼명	한덕	정위	주조	전화
(한문)					

첨부 공고문 1부. 끝.

수신처 에임, 정화, 무공화, 서울, 중앙고등기술학교, 이랜드직업훈련원

제 9 안

수신 법무부장관

참조 고정국장

제목 등 건

1. 75년도 당시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을 별첨과 같이 실시하오니 수행자 직업훈련 규정에 의한 원생중 이,미용사 자격시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전원 응시 토록 협조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10부.

제 10안

수신 수신처장조

제목 등 건

1. 75년도 당시 이, 미용사 자격 시험을 법검과 같이 실시하오나  
괴소 원생중 이, 미용사 자격시험규정제 4조 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전원 응시토록 협조 조치하여 주 기 바랍.

첨부 공고문 1부

수신 시립부녀사업관장, 시립여자기술원장

제 11안

수신 수신처장조

제목 미용사 자격시험에 따른 확인 집행

1. 75년도 당시 미용사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바 이 시험  
에 따른 학원 수료자 및 수료 확인증 발급을 더욱 철저히 하여 미수료자에  
대한 확인 업무에 늘 미스런 시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만일 학원 미수료자에 대한 확인 사항이 발견되면 시직 당국에  
고발 함과 동시에 학원의 등록을 취소할 것이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1부. 끝.

수신처 명파, 신일, 현대, 진신미, 영동초, 보교, 새서울, 경기 미용학원장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서

1. 시험종별

- 가. 이용사 자격시험
- 나. 미용사 "

2. 시험입시

가.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

- 1) 학과시험 : 1975. 4. 20 (일) 09:00 - 13:00
- 2) 실기시험 : 이용사 75. 4. 27(일) 09:00 - 17:00  
미용사 75. 5. 4(일) 09:00 - 17:00

3. 시험장소

이, 미용사 자격시험은 해당 기술 분야를 다루는 시험인 만큼 이에 소요되는 제반 시설이 심습실과 약 2,000여명씩 응시자를 수용할수 있는 시내 교통이 편리한 중앙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다음의 학교 시설을 사용코자함

가. 학과 시험장( 이, 미용)

연지대학 (석대문구 석소문 58-17호)

나. 실기 시험장

정자동 기술학교 (중구 남산동 1가 8의3호)

4. 합격자 발표 입지회 장소

가. 학과 시험 발표 : 75. 4. 24(목) 15:00 시청후정계서관

나. 최종 합격자 발표 : 75. 5. 9(금) 15:00 "

5. 시험과목

가. 이용사 및 미용사 학과시험

1) 회상 빈구

2) 소독법

3) 불꽃시험

- 4) 생리학부 (생부 과학을 포함한다)
- 5) 물리학 화학(화학품 화학및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부문에 한함)
- 6) 이용 또는 미용 이론 (이용시는 이용 이론, 미용사는 미용 이론)

나. 이용사 및 미용사

- 1) 이용 또는 미용의 기초적 기술  
(이용은 조발, 면드 등 미용은 아이름, 샴딩 등)
- 2) 소독의 취급
- 3) 이용 또는 미용할때의 위생상의 조치

6. 용시 자격 (다음 구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국민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사실 감소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이, 미용사 자격시험 규정제 11조의 규정이 의 하여 서울특별시장에 기동등을 필한 이용 또는 미용 학원에서 (7.월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나. 국민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영업소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아동 부녀법 제32조 및 수험자 직업 훈련 규정에 의한 특과 훈련 교도소, 시 도립 소년 소녀 직업보도소 및 시, 도립 부녀사업관, 여자기술원에서 소정의 이용 및 미용과의 과정을 수료한 자

7. 용시 원서 구비서류

- 가. 용시원서 1통 (당시 소정 양식)
- 나. 이력서 1통
- 다. 건강진단서 1통 (보건소장 발행)
- 라. 학원 수료 확인증 1통 (등록된 학원 수료자에 한함)
- 마. 종업원 확인증 1통 (보건소장 발행)

바. 사진 3매( 앞면, 정면, 상반신 최근 3월이내 촬영 3×4<sup>cm</sup>)

사. 주민등록 초본 또는 호적초본 1부

아. 수수료 200원(서울특별시 수입증자 접수)

8. 음식 원시 접수 기간

가. 접수 기간 75. 3. 25 - 4. 4(공휴일 제외)

나. 접수 장소: 보건사회국 보건행정과

9. 기 타

제출된 음식원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이용사 음식작업 실패시합  
실습상 모델 관계가 있어 심기 음식 15일 전부터 조발치 알기를 음식원서  
접수시에 주지시킨다

10. 시험 위원회 구성 및 위촉

이용사및 비용사 자격시험 규정(보건사회부 영규제 64호)에 의거 당시

이용사및 비용사 자격시험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가. 시험 위원회 구성

위원장 - (보건사회국장) 위원장은 시험기관중 위원과 관계직원을  
pick 감독한다

부위원장 - (보건행정과장) 위원장 부제시 그 접무를 대리하며 위원장  
을 보좌한다

관 사 - (위생계장) 시험 실시에 따른 준비와 시험장을 관리  
하여 관계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서 기 - (위생계 담당직원) 시험은 시험 전반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관과 시험 위원 - 0 선정 기준

1) 현재 이, 이용 고등기술학교장 또는 시험 과목에 대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2)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무관급이상 공무원

3) 이, 미용사 중앙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0 위원수 : 미용사 및 미용사 적임 과목당 2명(별도 위촉)

심기 시험 위원 - 0 선정 기준

1) 현재 이, 미용 고등 기술 학교장 직에 있는  
유력한 인사 ,

2) 이, 미용사 중앙회에서 추천하는 이, 미용의  
유력한 인사

0 위원수

이용 및 미용 과2명(별도 위촉)

( 심기출제 및 채점에 책임은 전다)

## 11. 시험 문제 출제 방법

### 가. 학과 시험

1) 학과 시험 위원은 담당과목에 대한 시험문제 40문제(주관식)을  
출제하여 위원장은 80문제중 20문제를 과목별로 30분 이내에 해당  
합수 있는 정도로 혼합 선택한다

2) 출제 범위는 현 이, 미용 고등 기술학교의 수업과정의 내용 정도를  
출제한다

3) 출제할 시험 문제는 당해 시험 위원이 밑놓나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한다

### 나. 심기 시험

심기 시험 위원은 이, 미용의 기초적 기술과 소득된 위생상 조치등  
으로 구분 구분 약대한 기술 습득을 측정 한다

## 12. 시험장 관리 및 감독

- 가. 보건사회국 산하 직원을 차출 시험에 관한 사무 및 시험장 감독원으로 배치한다(차출 인원은 응시수에 의거 추후 결정함)
- 나. 감시관은 배치된 시험장 이외에 다른 시험장 출입을 금하여 정내 시험 감독과 시험 답안지, 시험 문제집등을 수집하고 이를 책임관에게 인도하고 시험장내 부정 행위가 있을 때는 이를 무효로 하고 관련자는 엄중 문책한다
- 다. 위원회의 시기는 감시관의 배치된 답안지 수집의 책임을 진다

## 13. 시험의 채점방법

- 가. 학과 시험은 과목당 20문제에 배점을 과5점으로 하고,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맞는 답만 계산하며 풀린 답의 감점없이 전자계산기(용류박)에 의하여 채점한다
- 나. 실기 시험은 이, 미용 외 기초적 기술과 소독 및 위생상 조치등으로 구분, 각분야의 기술 습득 상태를 과 실기 시험위원이 측정 결과를 점수로 채점한다

## 14. 시험 합격 기준

- 가. 학과 시험
  - 1)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6과목 총점 600점 만점으로 하고 총득점 240점 이상을 득하면 합격으로 하고 240점 미만인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 2) 단 총득점이 240점 이상이라도 1과목이 40점 미만인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나. 실기 시험

1) 과 실기 시험 위원은 미용 또는 미용의 기초적 기술과 소독 및 위생상 조치등으로 구분 과분야에 대하여 각각 채점한 점수를 합하여 평균 60점 이상은 합격으로 하고 60점 미만인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실기 시험 합격자는 시험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15. 합격증 교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는 소정 양식에 의한 합격증을 75. 6. 19까지 당시 보건행정과에서 교부한다

서울특별시공고 제 10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안)

당시 75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을 이용사 및 미용사법 시행규칙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975. 3.

서울특별시장

공인명	1975.3.7	세 55	5
심사자	자법재계장	한국공정관	
김민	김민	김민	

1. 시험일자 및 장소

가. 학과 시험일자: 75. 4. 20(일), 09:00

장소: 명지대학 (서대문구 서소문동 50-11호)

나. 실기시험일자: 이용사 - 75. 4. 27(일) 09:00

미용사 - 75. 5. 4 (일) 09:00

장소: 정화고등기술학교 (종구 남산동 1가 8의 3호)

2. 응시자격

가. 국민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사심검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이용 및 미용사 자격시험 규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을 필한 이.미용학원에서 6개월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자.

나. 국민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이.미용업소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다.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영년법 제 32조 및 수형자 직업훈련 관련 규정에 의한 복귀훈련고도소, 시, 도립소년, 소녀 직업보도소 및 시, 도립 부녀 사업관, 여자기술원에서 소정의 이용과 및 학습과의 과정을 이수한자.

라. 제 1차 학과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제 2차로 실기시험에 응할 수 있다.

3. 시험과목

가. 학과시험(이론), 미용 공통 214

- (7) 외생담균
- (2) 소독법
- (3) 공중위생학
- (4) 생리 해부학 (피부과학포함)
- (5) 물리 및 화학, 화장품 화학 및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부분에 한함)
- (6) 이용사는 이용이론, 미용사는 미용이론.

나. 실험시험 과목

- (1) 이용, 미용의 기초적 기술
- (2) 소독의 취급
- (3) 이용 또는 미용할 때의 위생상의 조치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75.3.25-4.4까지(공휴일제외)

나. 접수 장 소: 보건사회국 보건행정국

5.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 가. 응시원서 1통(당시 소정양식)
- 나. 이력서 1통
- 다. 건강장단서 1통(보건소장 발행)
- 라. ~~취업 수료확인증 1통(등록된 학원수료자에게 한함)~~
- 마. 종업원 확인증 1통(보건소장 발행)
- 바. 사진 3매(탈모, 정면, 상반신, 최근 3달내 촬영(4센치))
- 사. 호적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 아. 수수료 200원(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첨부).

6. 합격자 발표

- 가. 학과시험: 75. 4. 24(목) 15:00 시청후정계서관
- 나. 최종합격자: 75. 5. 9(금) 15:00 "

7. 기타 주의사항

- 가. 학과시험에 필요한 필기도구(검정색, 청색볼펜또는 만년필)를 지참  
 기타 시험 당일 08:30까지 시험장 지정 확실히 확인하여 시험 당도

관외 지시 ~~에 응하여야 한다.~~ 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실험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실험시험에 소요되는 이용 또는 미용 기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다. 이용사용시자는 실험시험일 15일전부터 조받지 않고 실험시험을 받아야 한다.

마. 미용사용시자는 세발후 생머리로 실험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바. 기막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보건행정과(72-9447) 나 각구보건소, 민원봉사실 및 위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문의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보건행정과 (72-9447) • 각구 보건소 민원  
봉사실 및 위생과



바. 임차료

215,000원

학과 시험 문제 출제 및 편집실 2500원 × 2실 × 3일 = 15,000원

학과 시험장 2,000원 × 40실 × 1회 = 80,000원

삼기시험장화의, 미용 기구 임차 3,000원 × 20기 × 2일 = 120,000원

합계 855,000원 ✓

나. 집행방법

보건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준으로 하여금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거 임시 전도자금 출납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집행함.

2218